

# 아르코공연연습센터@울산 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울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라 한다)와 체결한 위탁 운영 협약에 따라 ‘아르코공연연습센터@울산’ (이하 “연습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목표)** 연습센터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무대공연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연습실을 제공한다.
2. 지역 공연 예술단체를 대관 우선하여 선정하고, 공평한 대관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체별 연간 이용일수를 제한할 수 있다.
3. 연습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모든 공연 예술 장르를 지원한다.
4. 연습공간을 제공해 울산 공연예술인들의 창작동기 부여 및 창작욕구 제고를 통하여 문화 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습공간”라 함은 공연연습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습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세미나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주차장을 포함한다.
2. “대관”이라 함은 제3자로부터 연습센터 사용 신청을 받아 사용목적에 맞는 대관을 승인한 연습을 말한다.
3. “대관사용자”라 함은 연습센터 사용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구와 정원)** ① 연습센터는 문화사업지원팀에서 책임 운영 및 관리를 한다.

② 연습센터의 상주인력은 3명 이내로 하며, 연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할 시 재단에서 임시 편성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연습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연습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법정공휴일
2. 그 밖에 재단의 대표이사가 정하는 휴관일

③ 대표이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사용시간 등)** ①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대관사용자의 신청서를 심사한 후 승인된 시간에 따른다.

② 연습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일정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월요일~토요일 (09:00~22:00)

2. 대관구분

구분	오전	오후	야간
시간	10:00 ~ 13:00	14:00 ~ 17:00	18:00 ~ 22:00

## 제2장 대관

**제7조(대관의 종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대관의 구분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에 따른 구분

가. 정기대관은 지정된 기간에 아르코통합대관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승인하되, 자체 대관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승인한다.

나. 수시대관은 당해년도 잔여기간이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

2. 목적에 따른 구분

가. 공연대관은 연습센터를 대관하여 관람객을 초청하는 실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대관을 말한다.

나. 연습대관은 공연 전 또는 장기공연 시 공연기간 중에 연습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제8조(대관 승인)** ① 승인방법은 아르코통합대관시스템에 신청 후 재단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아르코통합대관시스템에 의해 승인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정식대관은 아르코통합대관시스템에 사용 신청을 하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관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여부 판정 후 대관료 납부 및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다.

2. 수시대관은 아르코통합대관시스템에 신청 후 재단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대관료 납부 및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다.

3. 수시대관 시 복수의 단체가 동일 일정으로 접수할 경우 적합여부 판정 후 접수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진다.

② 정기대관 승인은 제9조에 우선순위에 의하며 대관의 필요성, 행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대관계약서는 예술위원회 대관신청서로 대체한다.

**제9조(승인대상 및 우선순위)** ① 대관 승인 대상은 울산시 소재 공연단체 및 개인으로

심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울산시에서 공연이 확정된 단체로 연습대관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대관목적이 예술창작 및 발표를 위한 경우
3. 상업적이지 않은 순수예술활동일 경우
4. 대관 기준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전체 대관일정의 효율화를 위해 일정이 적합할 경우
6. 예술위원회, 재단의 지원사업일 경우
7. 전문예술법인단체, 비영리문화예술 민간단체의 경우
8. 울산시민 문화향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을 할 경우
9. 과거 이용 시 계약규정 등 대관규정을 잘 준수한 공연단체 및 개인

**제10조(대관 제한)** ① 대관 제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해 가능하다.

1. 공연의 내용이나 수준이 연습센터의 운영목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 종교적 행사, 특정이념 전파, 유사판매 행위 등의 행사
3. 시설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거나, 유지관리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4. 시민 정서 및 사회통념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사
5. 회비 및 참가비가 있는 수익성 사업이나 공연(2인 이하 소규모 공연도 해당)이 포함된 행사
6. 오디션 및 면접과 같은 여러 인원이 이동하는 성격의 행사
7.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타 대관자의 이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경우
8.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 없는 행사성 공연연습
9.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학예회 공연연습 또는 정상적 무대공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천재지변 또는 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적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변심 등의 개인적 사유로 취소한 단체
11. 대관신청 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12. 예술위원회 및 재단으로부터 취소 등 제한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1조(대관 허가의 취소)** ① 절차에 따라 승인된 대관은 취소를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에 의해 사전 통보 후 취소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연습센터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대관사용자가 사용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관기간 중에도 취소할 수 있다.

1. 연습센터의 대관 조건이나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대관신청 시의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연습센터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대관사용자가 연습센터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를 기한 내 미납한 경우

**제12조(임대 취소 및 임대료 환불)** ① 대관사용자는 대관 취소에 따른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예술위원회의 환불요청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대관사용자가 대관료 납입 후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취소한 경우 납입금의 100%, 7일 전에 취소한 경우 예술위원회에서 대관사용자에게 납입금의 50% 금액을 환불한다. 그 이후 취소할 경우 대관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③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예술위원회의 귀책사유 및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관취소 및 계약 해제 시에는 예술위원회에서 대관사용자가 납부한 임대료를 전액 환불한다.

④ 모든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예술위원회에서 정한 약관을 따른다.

**제13조 (대관신청 및 절차)** ① 대관 신청자는 예술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관신청 시 연습공간 종류, 참석인원, 임대시간, 연습 또는 행사 주제, 기자재 사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정기대관신청 기간은 연 4회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대관신청 기간 내에 접수한 대관신청의 심사승인 후 잔여일이 발생하거나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대관사용자가 공연 리허설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변경신청서는 10일 전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변경은 연습센터의 잔여 일정을 감안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한 단체 당 연간 최대 대관 사용 일수는 100일로 제한한다.

**제14조(대관사용자의 의무)** ① 대관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연습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예술위원회 및 재단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행사참석자 등도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담당자의 통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대관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대관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④ 대관사용자는 지정 장소 외에 현수막 및 포스터, 기타 홍보물 등을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대관사용자와 협의 없이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⑤ 대관사용자는 본 건물 및 관련 부속건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

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각종 기기의 방치 행위
  2.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행위
  3. 임의로 냉난방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4. 연습센터 운영자의 동의 없이 시설물 이동변경 및 장비 반입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식을 해치는 행위
  6. 알코올성 음료의 판매 및 식음, 취사 행위
  7. 기타 관리규정에 제한된 금지 행위
- ⑥ 대관사용자가 위의 항목들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행사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으며, 향후 대관에 있어서 해당단체의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원상 복구)** ① 대관사용자는 대관 기간 종료까지 대관한 장소에 대하여 원상으로 복구 및 임대장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관사용자는 행사를 위하여 반입한 시설, 장비, 물품, 기타 자재를 임대기간 종료까지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해체할 시에는 재단이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대관사용자는 철거에 든 비용 및 보관비용을 변상할 의무를 진다.

③ 대관사용자는 전항의 변상비용을 작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예술위원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대관사용자는 대관장소 일체를 사용하면서 파손, 훼손, 무단변경을 할 수 없으며, 파손, 훼손 및 원상복구 지체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예술위원회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제16조(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사용자는 예약한 연습실의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배상책임)** ① 제10조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대관계약을 취소, 정지시켰을 경우 대관사용자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손해 배상이나 관련 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대관사용자는 행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행사 진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전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였음에도 공연장의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책임범위를 결정한다.

③ 대관사용자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대관사용자는 재단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재단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적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대관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대관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8조(규정의 효력)** ① 이 규정은 계약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따르며, 해석에 대해서는 재단의 해석을 따른다.

③ 대관사용자가 필요에 의하여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서에 미리 기재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규정 위반시 책임 및 관할법원)** ① 규정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위반자가 책임지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② 법적분쟁 발생 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단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3장 보칙**

**제20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예술위원회 및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 대표이사 정하는 방침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기한)**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별지 1]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약서

서약서

신 청 인	단체명 :	사업자·고유번호
	대표자명 :	(없을 시 신청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E-mail

상기 신청인은 아르코공연연습센터@울산 운영규정 中 대관에 관한 항목을  
숙지하였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서 약 인

(인 또는 서명)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